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1 | 2024.02.06 (2024.01.29~02.04)**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4.02.0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9~02.04)



2024

謹賀新年

지난 한 해 세종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늘 함께 하는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제7차(1/30),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제8차(2/1) 민생토론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디지털 혁신 방안으로는 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구현, 인감증명제도 혁신), ② 게이미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이미용자 권익 보호,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게이미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③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비대면진료 활성화,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등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방안으로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는바, ① 의료인력 확충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등), ② 지역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추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등),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 등), ④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 추진 등)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 도출하였으며,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7,00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불, 민간 투자 150조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는바, ①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 ②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14.7조 원) 공급, 국가전

락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 지원, ③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30년 50% 이하('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23.12월 발표)' 본격 추진, ④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 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 계획, ⑥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 대폭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그리고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하고, 해당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차기준 특례도 적용하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기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상시적 위기관리 조직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위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이번 주에는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이 없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7차 민생 토론회 개최(정부부처 합동) 9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8차 민생토론회 개최(정부부처 합동) 12
-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완비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산업통상자원부) 19
- 2024년 업무계획 발표(산업통상자원부) 20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보건복지부) 22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소벤처기업부) 25
-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관세청) 26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금융위원회) 2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3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국토교통부) 30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3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3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5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6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국토교통부) 36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8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9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4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4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4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4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41
•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4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44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채익의원 등 11인)	44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5인)	45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1인)	46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4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47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2.01.) [바로가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4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5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5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52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52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53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53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안)	5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9~02.04)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 [노동]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
- [ESG] EFRAG, ESRS 보고 이행을 위한 실무지침 발간
-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 분야)
-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산과세 분야)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국방획득/방위산업]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 [공정거래] PEF 설립, 임원 총수 1/3 미만 겸임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 임박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 합동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7차 민생토론회 개최 - 구비서류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건강관리 지원	2024-01-30
---------	--	------------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여 3가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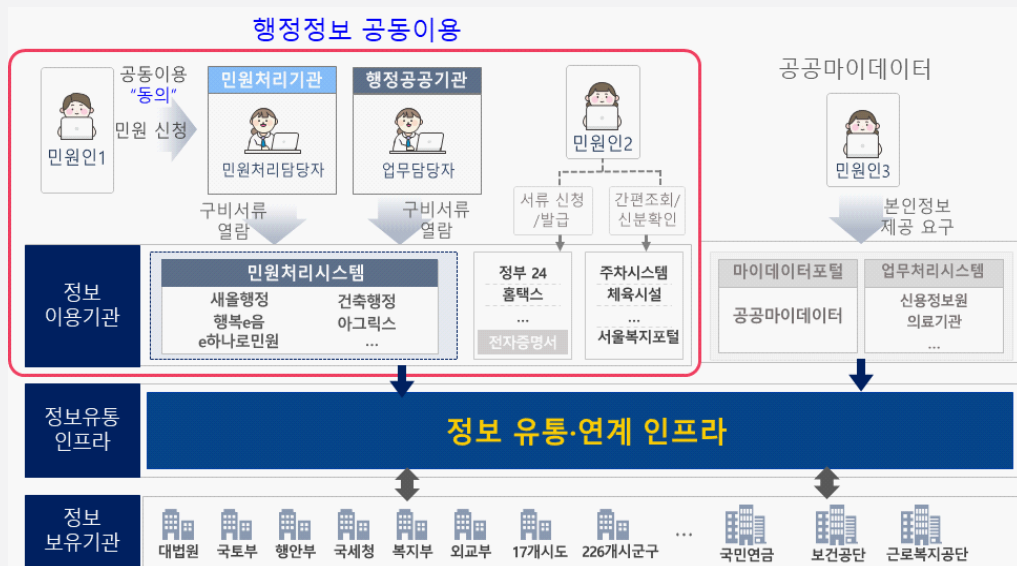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구현

-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체계>



◦ 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

②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 (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
-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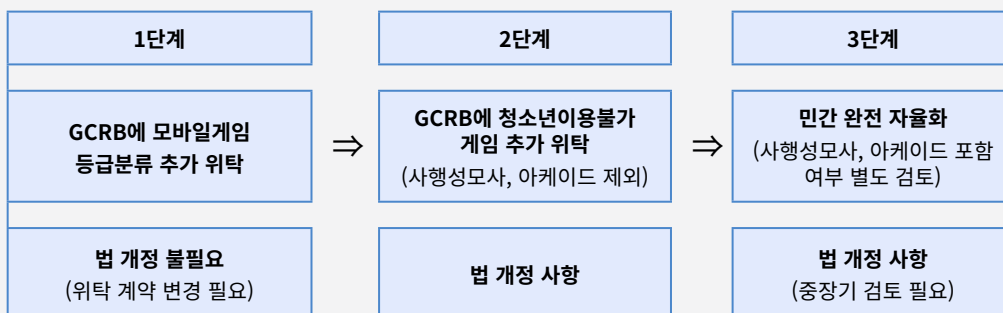
-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개정안에 따른 동의의결제 개요>

신청	▶ (주체)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 (행위)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거래 행위(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 (목적)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절차개시	▶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결정
의결	▶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정방안이 ○신속히 거래질서를 회복시키는지,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그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지 등을 고려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동의의결 가능
의견조치	▶ 공정위는 동의의결 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며,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그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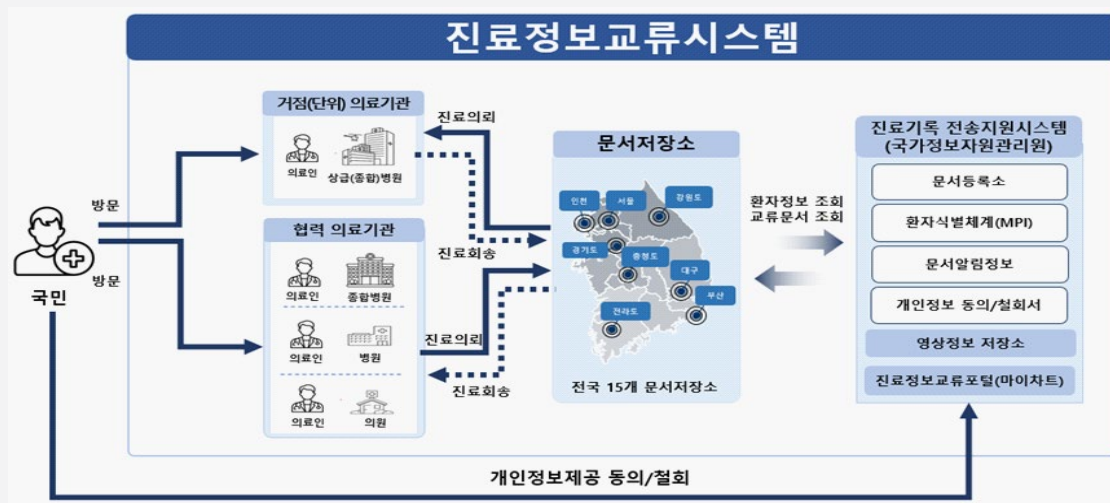
③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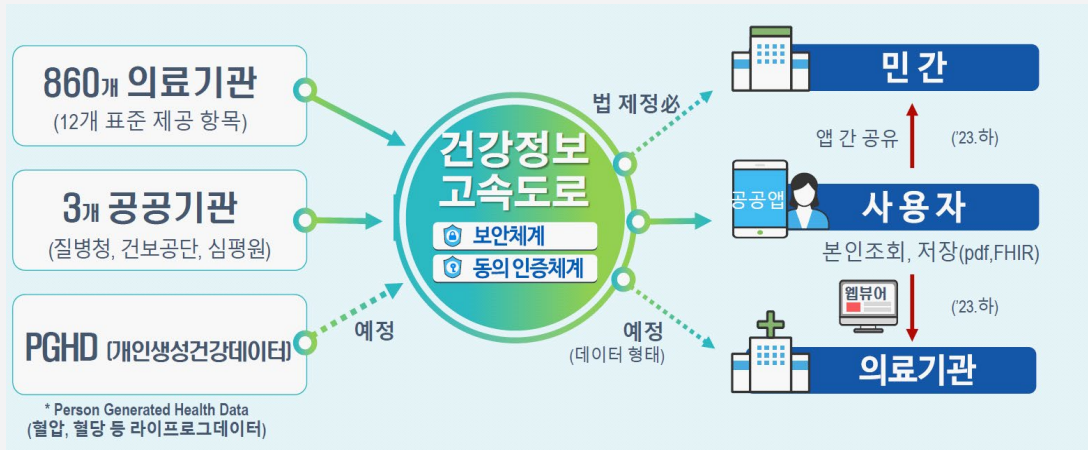
-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

기존						보완(현재)
① 의원급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자	
	예외적 허용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	의료 취약지	섬·벽지 지역 거주자 -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취약 시간대 (휴일, 야간)	18세 미만 소아 (의학적 상담, 처방 불가)	⇒	전체 환자 (대상 제한 없음, 처방 가능)	
		취약 계층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	현행 유지	
② 병원급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 희귀질환자(1년 이내),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현행 유지	
③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원 권유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면진료 요구,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미해당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	사후피임약 처방 제한 추가	
	-				처방전 위 · 변조 방지방안 마련	

-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



-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



정부부처 합동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8차 민생토론회 개최

- 버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2024-02-01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여,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

-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
-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 개선
-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 참고:전문의 중심 병원 개념 >

- ① 전공의 업무 위임 개선 및 수련 집중 여건 조성 ➡ 의료서비스와 수련 질 향상
 - ② 전공의 의존 → 전문의 중심 전환에 따른 전문의 추가 고용 및 역할 확대
 - ③ 전문의·전공의·지원인력 등 분업체계 확립 ➡ 전문의 업무부담 ↓ + 효율성 ↑
 - ④ 비전 제시, 적정 보상,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전문의 장기근속 여건 마련
 - ⑤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의 경력경로 활성화
 - ➡ ① 연구집중, ② 교육·수련지도 특화, ③ 진료 전담 등 교수급 의사 역할 다양화
- ※ 업무부담 완화 + 좋은 일자리 확대 → 전공의 지원 ↑ + 전문의 유출 ↓ · 유입 ↑ 선순환

둘째, 지역의료를 강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육성 방안>

- ▶ 총인건비, 정원 규제 등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 ▶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병원 자체 중증·필수 역량 강화 +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 기관 역할 수행 핵심 인력 활용
- ▶ 혁신적 R&D 투자(ARPA-H) 확대 및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 ▶ 노후 시설·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 확대

-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 추진
-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대폭 확대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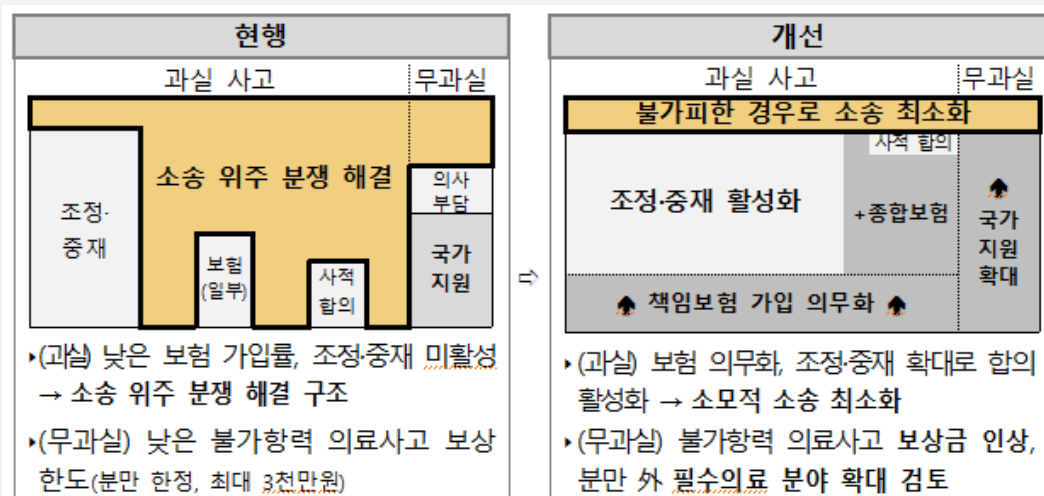
-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 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 지원 → 일정 기간 지역 근무
- ▶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 + 定住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
-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셋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효과>



넷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
-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 量 기반 보상으로 量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지원 (적자 사후보상 등)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 보상 가능	유연성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 (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확일성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확일성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
-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

그리고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임

<기대효과>

 국민·환자	▶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중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함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 도출
 -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
- ②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 진행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

< 17개 분야 52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행정영역 디지털 대체수단 확보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 플랫폼 종사자 보호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재택근무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대응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 -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AI·데이터 활용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 취약계층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유·초·중등 AI·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 온라인 플랫폼·AI 시장의 공정성 확보 -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 디지털세 과세 방안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 생성형 AI 산출물의 법적지위 및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여부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데이터 개방 촉진 	-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 디지털 기반 작업교육 체계 개편	
AI 안전·신뢰성 확보 	- AI 편향 대응 -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규범 정립	AI 제조회사 책임 관련 제도 정비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기준 정립 -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 - AI 채용 관련 기준·원칙 정립 - 군사분야 책임있는 AI의 활용 방안	-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자율운행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 -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 디지털 재난 예방, 대응 -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확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혐오 표현 대응 -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디지털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등 디지털 권리 보장 - 디지털 범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관리 	-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형성 -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

< 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 AI 알고리즘의 편향 방지, AI 제조물 책임 명확화 등 **안전한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적정 수준의 규범** 마련 필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AI 기술 발전 및 **활용분야 다변화**, 이해당사자 간 참여한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문체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안전성·효과성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필요

복지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 생성형 AI 기술의 오남용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표기 등 실질적·구체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방통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

-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유연한 업무 환경**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의 삶과 업무가 분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 활발

고용부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의 사진·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점 모색 필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인프라**가 핵심 기반 시설로 기능하는 만큼 **재난·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과기정통부
국조실
여가부
방통위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필요

과기정통부
행안부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과 디지털 전환 시대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하였으며, 이로써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로드맵이 완성됨

금번 로드맵에는 탄소중립을 주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와 우리 독자적 공급망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위한 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발사체·위성탑재체·달착륙선 핵심부품 자립화 등이 포함됨. 또한, 6G 국제표준 확보, 장애물 극복 및 비정형 물체 조작 등 로봇분야 난제 극복, 소프트웨어의 해킹 취약지점 사전식별 등 초거대AI 일상화의 기점이 될 핵심기술을 식별함

이와 함께, 기존 6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와 직결되는 4건의 사업을 핵심 프로젝트 후보로 추가 지정함
※ 사업의 실제 추진여부 및 세부내용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12대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이 완성되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도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융복합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III) - 거대과학 분야 주요 임무		
1 차세대 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 (i-SMR) 선진원자력시스템 / 폐기물관리	세계 최고의 SMR 안전성 및 제조기술 확보, MSR 등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 기존 대비 50% 이상 제작기간 단축, 비상시 30일 이상 안전냉각이 가능한 SMR ▲ 물이 아닌 냉각재를 활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원천기술(용융염(MSR) 등)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확보
2 우주 항공 해양	대형다목적소형위성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행성기상·태양·인공위성 해양 자원탐사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관련 핵심 기술·부품(위성 안테나 등) 자립화 ▲ 엔진, 추력제어(가속속 조절) 등 차세대발사체 선도기술 확보 ▲ 25cm급 SAR 위성 안테나 등 세계 최고수준 위성영상 관련 핵심부품 자립화 ▲ 차세대 전투기 엔진기술 및 심해자원탐사 기술 고도화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IV) - 필수기반 분야 주요 임무		
1 차세대 통신	6G 6G 고도화 위성통신 오픈랜(Open-RAN) 고용률 통신부품	지능화·저전력화 기술로 표준특허 선점 → 6G 세계시장 선도 ▲ AI 기반 지능화·저전력화 네트워크 기술로 표준특허 선점 ▲ 6G 연구개발 중간 성과로 '26년 Pre-6G 기술 시연 ▲ 화합물 반도체 기반 6G 핵심부품 국산화를 제고
2 로봇 제조	로봇 부품 SW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가상제조	생성형 AI 기반 이동·조작·상호작용 → 인간 수준의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 로봇의 인지·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센서·구동기·제어기) 자립화를 제고 ▲ 비정형·미학습 물체를 정교하게 인지 및 조작 (95% 이상) ▲ 장애물, 약천후 등 고난도 상황 신속 극복
3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디지털취약점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융합 보안	제로트러스트, AI 보안 등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 적용으로 능동대응력 확보 ▲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해킹 취약지점 사전검증 체계 확립 (SBOM) ▲ 양자내성암호, 보안 특화 언어모델 등 초신뢰 데이터보안 기술 고도화

<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 거대과학·필수기반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분야	사업명 / 임무	주관
인공 지능	■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개발	과기 정통부
	⇒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AI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 바이오파우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과기정통· 산업부
	⇒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바이오파우드리 인프라 구축	
반도체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산업부
	⇒ 차세대 패키징기술 선도 및 기술격차 극복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디스플레이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1위 수성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제시

2024-01-30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 「디지털헬스 기업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헬스 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함

* 디지털헬스 산업: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분석한 건강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소프트웨어·플랫폼 등과 관련된 산업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으로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디지털헬스 산업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②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적 활용방안 마련, ③ 현장 중심의 바이오·정보기술(IT) 융합인재 양성, ④ 민간 투자·수출 지원 등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3,480억 불('22년) → 4조900억 불('32년)로 연 28% 성장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헬스 혁신 제품·서비스의 수요창출 및 상용화 지원

- ('24년) 고령화,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국제공동 R&D 적극 추진
* 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영양 신체분석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건강 체크 및 지능형 관리 플랫폼 개발 등
- (중장기) 다수 서비스 수요를 연계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②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 마련

- (구축) 100만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자·기업 중심의 통합 데이터 구축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24~'28년, 복지부·과기부·산업부·질병청)
- (활용)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및 글로벌 사업모델과 연계

③ 현장 중심의 바이오-IT 융합인재 양성

- ('24년) 디지털헬스 전문인력(석·박사급) 및 현장인력 총 250여명 양성
* 디지털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 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 등
- (중장기) 최근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직무전환 재직자 등에 대한 IT·BT 융합형 인재 양성사업 추진

④ 민간 투자 및 수출 지원

- (투자) 바이오헬스 분야 4.2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 및 범부처 위원회를 통해 규제·투자애로 적극 해소
- (수출) 무역보험 25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지원, 「K-바이오 데스크」 신규 설치를 통해 바이오 특화 진출거점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업무계획 발표

- 수출 7,000억 불,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 불 달성
-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 150조 원 실현 지원
- 무탄소에너지로 에너지시스템 대전환 및 글로벌 확산의 원년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7,00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불, 민간 투자 150조를 목표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4대 글로벌 트렌드(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

-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역대 최고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 인하(최대 20%)도 올해까지 연장

- 디지털·청년 무역인력을 1,800명 이상 양성하는 등 청년 및 1인기업,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중견기업에 걸쳐 단계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을 강화
-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하여 그간의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민간 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단장:통상차관보)을 통해 사전 기획 및 홍보 기능 강화

②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외국인투자 포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금융(14.7조 원) 공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 지원

-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 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 검토
-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인공지능(AI)·디지털로 혁신하는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추진
-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전격 전환

③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30년 50% 이하(’22년 70%)로 낮추고자 하는 ‘산업 공급망 3050(’23.12월 발표)’ 본격 추진

- 이차전지 등 주요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속히 자립화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도 지원
- 리튬(기존 5.8일 → 30일분), 영구자석용 희토류(기존 6개월 → 1년6개월분)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도 신규로 구축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유·가스의 비축 확대와 함께 용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개발 고도화 연구개발(R&D) 예타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

④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 대전환

-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 전
- 원전, 재생e,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 중점 확대
-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
- 원전(차액 계약제도), 재생에너지(가격 입찰제도)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 신설, 유연성 자원인 양수·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수익구조 개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

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산단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소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편의·주거시설 확대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탈바꿈
- 산단 내 제조과정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단 안팎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능력 강화 지원

⑥ 국민과 기업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의 관행 대폭 개선

- 재생에너지의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보급·용자 지원 제도 개선
-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강화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슬로건,
4대 추진방향 제시

2024-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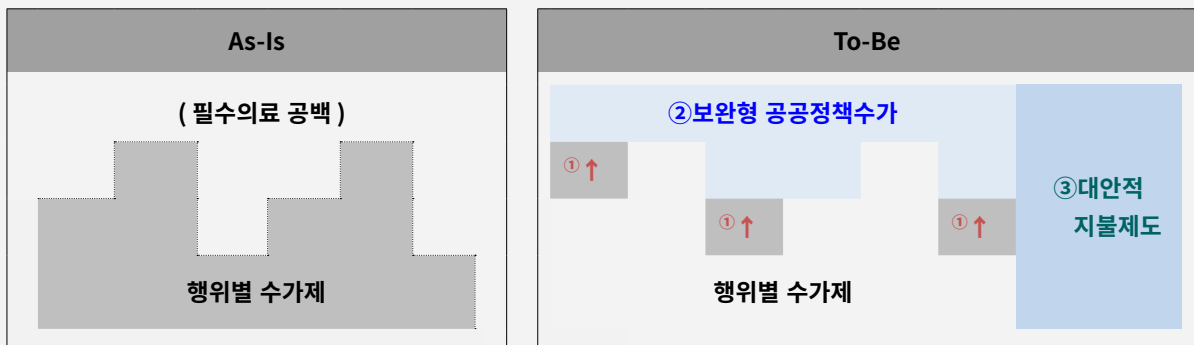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음

이번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



* ① 필수의료 집중 인상, ②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③ 대안적 지불제도(대안형 공공정책수가, 묶음수가 등)

❶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

▶(지출목표)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 제시

※ 전년도 지출목표 초과분은 다음 연도 수가 인상을 산정 시 고려

▶(비용조사)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하여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 실시

▶(수가조정)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

❷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 수가 산정 방식 : (現)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③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

※ 대안적 지불제도 사례

▶ (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손실을 기관별 차등보상

▶ (중증)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4~'26)

- 외래진료 감축,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차등보상

▶ (지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24. 下~)

- ▲성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제공, ▲특성화·협력 진료량 고려 총보상규모 설정

④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

※ 성과 중심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 (공통지표) 평가통합포털을 통한 공통지표 선정·활용 ※ 공통지표의 중복 조사 방지

⇒ 유사지표에 대한 평가 반복 등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성과지표) '투입·구조·과정지표' 위주에서 '성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재정비

▶ (성과보상) ▲의료질 평가지원금 등은 기관별 성과에 비례한 보상으로 개편, ▲각종 평가 관련 재원'을 통합하여 약 1.5조 원 규모 재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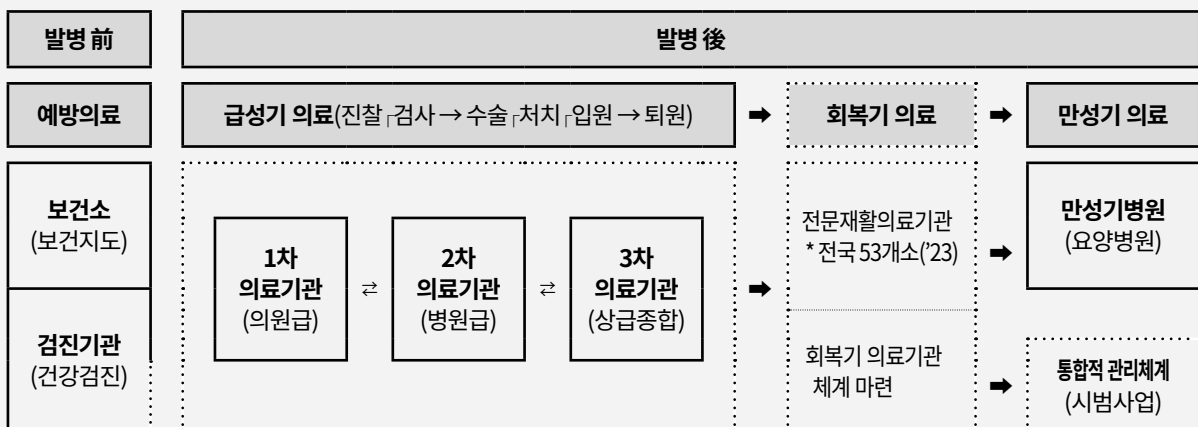
* 의료질 평가지원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종별 가산 등

⇒ 성과보상의 획기적 확대로 의료 질 개선 및 성과 달성의 실질적인 유인 강화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

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

【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 】



②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

-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

③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

- * 소위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없이 동결('24), 재난적 의료비의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24) 등
- **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 : (現)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 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
-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①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 비급여 명칭, 분류코드는 표준화하여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

②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choosing wisely campaign)'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하여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

- * (병상수(1천 명당, '21)) 韓 12.8개 > OECD 4.3개 / (CT(100만 명당, '21)) 韓 42.2대 > OECD 29.8대
- **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의료전문가가 스스로 적정의료 목록을 작성 보급하여 불필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美 내과의사재단(ABIF)에서 최초 시작, 20개국 80개 전문학회 참여)
-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 '21) 韓 15.7회 > OECD 5.9회
- ** (예)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율 90%로 상향, 물리치료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③ 기존 급여 항목의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 확립.

④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 - 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 개선

⑤ 재정지표 공개를 확대하고,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 마련

넷째, 필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

- ❶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 중요
 -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
- ❷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보건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❸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 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하여 보건 의료 혁신을 선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30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임

주요 내용으로는

- ❶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
- ❷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 (2+2년→4+2년)
 -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 부여

-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 확대

③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
-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

※ 이외에도 ▲실증특례 ·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 · 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김

<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확대	광역자치단체 * 수도권 제외	현행+기초·특별자치단체+제주행정시 * 수도권 제외는 유지
이의신청 제도 신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부재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신설
절차 단축	특구계획 변경시 공고·부처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 이외 지역의 사업자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서 재정지원 없이 실증특례는 이용가능하도록 규정(고시규정)	타 지역 사업자도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토록 법률에 명시(상향입법)
실증특례 유효기간 확대	2년(최초) + 2년(연장)	4년(최초) + 2년(연장)
규제부처 법령정비 이행 강화	법령 정비 착수 의무만 규정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보고 후 60일 이내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 의무 신설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2년(최초) + 2년(연장)	3년(최초) + 2년(연장)
적극행정 촉진	규정없음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근거 신설
기타 특례규정 현행화	◦ (신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규제 특례 추가 ◦ (삭제)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처리 특례 삭제(법령정비 완료)	

관세청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2-01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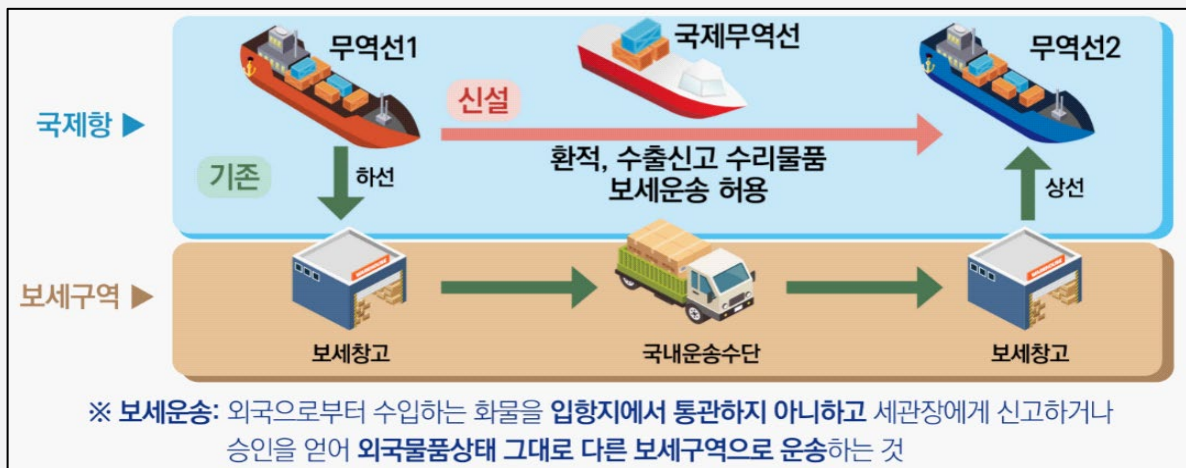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24. 7. 1. 시행)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24. 1.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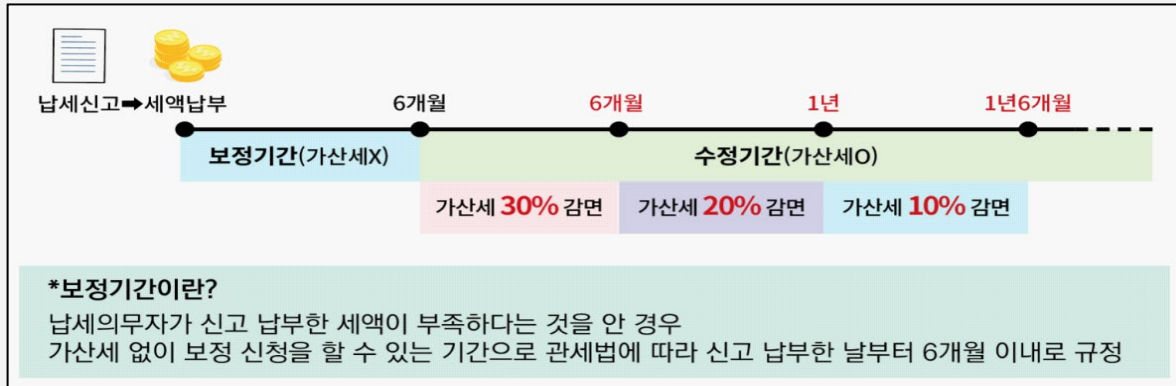


-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24. 1. 1. 시행)



②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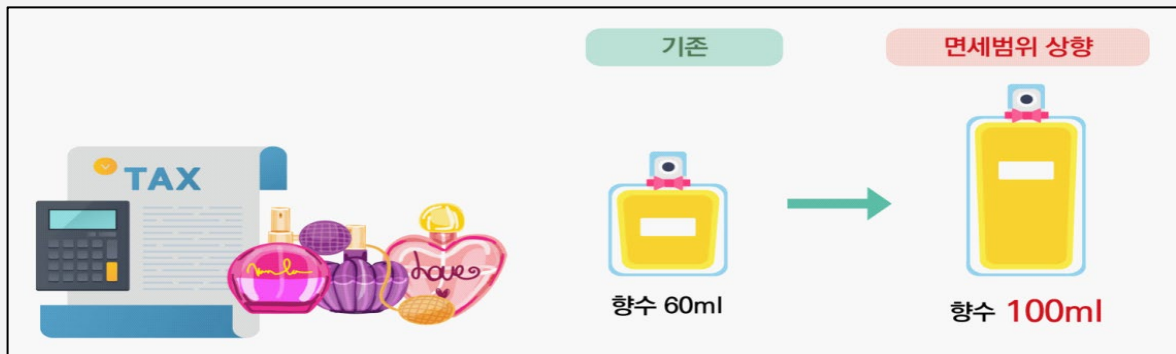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 ('24. 1. 1.시행)



-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24. 3. 1.시행)



-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24. 1. 1.시행)



③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유니패스 전담 운영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4. 7. 1. 시행)
-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24. 1. 1.시행)

금융위원회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2024-01-31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키로 함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은행권 이자환급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② 중소기업권 이자환급

-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③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확대 개편

-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구 분	대출 취급시점	금 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12.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한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 금융권	'23.12.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5.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한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024-01-30 시행 (다만,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도지사 하역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9조제7항제3호 신설, 제19조제7항제4호 신설, 제67조제4항제1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77조제1항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4-01-30 시행 (다만 일부 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46조, 제46조의2, 제58조제6항제3호, 제64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2025-02-01 시행예정
-------	---------------------------	------------------------

자동차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경형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그 대상을 정하고, 경형 자동차의 제원(諸元)에 관한 일반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배기량에 대응하는 전기자동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신설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형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00cc에서 125cc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 제1호)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31 시행예정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4호의2 신설, 제2조제5호의2 신설, 제9조의2 신설, 제19조)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4-07-31 시행예정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관리인 등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제60조의2 제1항제2호)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2.02. ~03.13.

환경영향평가·통합허가 사업장 등에서 요구하는 측정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개편하여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및 측정장비 중복 등록허용 등 그 밖에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안 제3조제4호)
 -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화
- ② 간이측정기 인증대상 명확화 (안 제6조의5제2항)
 -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성 제고
- ③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 (안 제15조의3제3항)
 -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준수가 어려워 사후(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 ④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 (안 제17조의6, 별표9)
 -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하여 시설·장비관리 합리성 제고
 -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 부여
- ⑤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안 제17조의7제2항)
 -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여 이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기한을 20일로 완화
- ⑥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 (안 제29조제2항)
 -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시 규정 마련
- ⑦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 (안 별표11의2)
 -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확, 정도관리 현장평가지 보유현황 확인 및 보유기준 마련

※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http://www.mest.go.kr) (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

「주택법」을 준용하던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63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거주 의무 예외 사유, 거주 의무기간 내 매입 절차, 부기등기 및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률적인 적립 요율, 경직된 사용기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분양·임대 간 형평성 문제와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적립 요율, 사용 협의절차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49조 및 제52조의2)**
 - 거주 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함
 - 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 의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함
 - 거주 의무에 관한 부기등기는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제출, 거주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거주 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② **특별수선 충당금 운영방식 개선 (안 제57조)**
 -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 중대한 하자 또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교체·보수에 사용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입주민의 안전·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민 동의를 거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거주 의무 확인 업무위탁 (안 제61조)**
 - 공공주택사업자 위탁업무에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 ④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63조)**
 - 주택매입, 거주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mailto:publichousing@kdi.go.kr) (전화: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31.
~02.29.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공공주택 사업 조성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하고, 해당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차기준 특례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을 추가 (안 제6조)
- ②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안 제37조)
 -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차대수를 세대당 0.3대로 의무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특례도 적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044-201-4528,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29.
~03.11.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와 관련하여 거주 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매입신청 및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24.4.25 시행 예정)함에 따라, **매입신청 및 거주 사실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거주 의무관련 서식 등 규정 (안 제23조의5, 별지 제7호의2,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 거주 의무기간 내 양도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 사실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을 정함

② 국가유공자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국토교통부령 제1242호)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29.3.31)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31.
~02.29.

정부는 지난 1월 10일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단일 용도로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심상업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완화** (안 별표 8 제1호나목)

-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비주거 용도와 복합된 경우만 입지 허용되고 있으나,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목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일 용도로도 입지가가능하도록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

②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기준 명확화** (안 제85조제3항제1호)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에서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31.
~02.29.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구성원을 위한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형 주택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안 제10조제1항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로 구성하되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01.
~02.13.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 (안 제63조의6 신설)

- 개정 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

②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안 제9조의2 신설)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4.02.01.
~03.12.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및 지원조직,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기준,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원 및 특례, 공공기여 방안, 이주대책 수립,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인 택지개발사업 등 대상사업, 조성시점, 면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 ②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기간, 내용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③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절차,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 사유, 내용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④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의결 시 제척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피·회피 결정과 민간위원의 해촉사유를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 ⑤ 도시정비기획단에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두고, 그 밖에 도시정비기획단의 업무·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및 제12조)
- ⑥ 실무위원회의 정부위원에 포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⑦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수 및 구성요건, 회의 개의 및 안건의 의결 요건을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시 준용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 ⑧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대상 구역에 자족기능 향상과 스마트도시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추가하고,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함 (안 제17조)
- ⑨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안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함 (안 제18조)
- ⑩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과 그에 필요한 의견청취 방법과 수립 이후 경미한 변경 사항의 예외사유를 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⑪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 등의 요건을 규정함 (안 제22조)
- ⑫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행위허가 대상과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안 제23조)
- 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에게 공고해야하는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24조)
- ⑭ 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 후 고시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 (안 제25조)
- ⑮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들의 범위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지정제안의 절차 등을 구체화함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⑯ 국가의 보조 또는 융자가 필요한 비용의 대상을 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29조)
- 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30조)
- ⑱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타법 및 조례에서 정한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범위와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리모델링사업의 특례 부여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규정함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①⑨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 평균 용적률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여의 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공공기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 ②⑩ 이주단지조성,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이주대책 수립 시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주거와 경제생활의 안정이 필요한 이주민의 요건을 구체화함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②⑪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활용 시 필요한 내용과 공급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40조)
- ②⑫ 사업시행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반시설로 규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 순서, 비용 분담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기간을 정함 (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②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안 제44조 및 제45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tel:044-201-4927)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2.02.
~02.29.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기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

이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재건축사업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 (안 제2조)
- ②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 (안 제10조의2 신설)
- ③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절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처분기한 위반 시 가산이자 등을 규정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 ④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담보제공 방법,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 ⑤ 재건축부담금 감경, 결정 및 부과,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한을 규정 (안 제17조의3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tel:044-201-3386)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안 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 ②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 ③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 (안 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 ④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직권 말소 절차 마련 (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사항을 말소 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⑤ **소용량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 (안 제19조)**
 -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재의무를 강화 및 해당 화장품의 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영유아·어린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및 보존제 함량 기재 대상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화장품으로 명확히 함
- ⑥ **화장품에서 광고가 가능한 인증의 종류를 민간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보완 (안 별표5)**
 - 할랄, 비건,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은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에 해당하나, 의사 등의 공인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http://www.mfds.go.kr)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2024-01-30 발의
-------	--	---------------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69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2024-02-02 발의
---------	------------------------------	---------------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10조제1항)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제1항)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함
- ③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
 - 1주택자인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2인)

2024-02-01 발의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 (안 제91조의18제2항)
- ③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2-02 발의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2024-02-02 발의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22. 10. 15.)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디지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3. 1. 3.)을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는 3개 법률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규율 대상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규제 소지가 있고, 디지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디지털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네트워크·서비스·데이터 등 디지털 전 분야에 대한 상시적·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발전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적시 대비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상시적 위기관리 조직인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운영 및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과 미래 디지털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안 제9조)

-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가 책임성을 갖고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일반적 노력 의무를 부과함

③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10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관리조치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체계를 정비함

④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안 제1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조치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에 따른 점검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함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안 제8조, 제22조, 제33조)

-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

⑥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안 제14조)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 및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주요디지털서비스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인력 확보 및 인증 획득 등 각종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함

⑦ 원인조사 (안 제19조)

-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장애 원인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⑧ 복구 및 재발 방지 (안 제20조)

- 대규모 디지털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가 발생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권고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장애 사고방지를 위해 동종 업계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함

⑨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운영 등 (안 제22조)

- 기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대체하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의 상시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함

⑩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27조)

- 주요 디지털서비스 장애 및 우수 대응 사례 등 사업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및 설비 정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2024-02-01 발의

현행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중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신문사가 지닌 뉴스콘텐츠 제작역량과 방송의 전달성이 갖는 시너지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3항단서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채익의원 등 11인)

2024-01-29 발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일극체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과 이를 위한 맞춤형 특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포항·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를 동시에 직면하여 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관성이 깊은 연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4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④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7조)
- 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함 (안 제8조)
- ⑥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 내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17조)
- ⑧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20조)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예산, 장비 및 인력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 ⑩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5인)

2024-01-31 발의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는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은 출판권자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해서도 준용되고 있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출판권자등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보상금 지급 규정은 출판권자등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고 있어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23년 2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음

이에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1인)

2024-01-31 발의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 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호)
- ②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사용·양도·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 ③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의2 신설)
- ④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함 (안 제114조)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2024-01-29 발의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하며, 공공 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8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2024-02-01 발의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음에 따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 ② 시·도지사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 ③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 ④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2.0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02.01.) 심의안건 요지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 ·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정무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나 등록 ·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 · 처벌함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내역을 보존하도록 함
- 고객이 계좌개설 등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필요시 개설거절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효율화를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
-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 · 이의제기가 있으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토록 함.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정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 법률 제1674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급효 문제를 예방하고자 둔 부칙 조항이 본칙 조항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본칙의 개정 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함

행정안전위원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도지사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함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만큼 교부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일본식 표현인 ‘유원시설업’,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테마파크시설’로 명칭 변경함
- 최근 성행 중인 불법 홀덤펍 단속을 위해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선고 등으로 관광사업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시 2년의 결격기간 없이 관광사업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텐트, 취사용품 등을 지자체장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업·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게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함
-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함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하여 「형법」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며, 허가 심사자료의 보호 규정을 마련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담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함.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의

위험도가 중위험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상연구가 선행되도록 하고, 고위험인 경우에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허용하며,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함.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와 심의를 규정함
- 재생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두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조항의 적용 범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로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함

환경노동통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난·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로 통합하는 한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함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 리츠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 유도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정안)

- 국제기준 상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국내법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행의무자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이행의무자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도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함
- ‘인증대체부품’의 명칭을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 관련 위원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정비협회의 정비요금 협의기한과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표결 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 ◦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함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수탁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함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 예정된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5(월) 10:30	인천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배준영·김교흥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2/6(화) 14:00	건전한 투자시장 방한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 - 신종증권·가상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김희곤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2/5(월)	「THE 현안」 제1호 발간 - 2024년 트렌드	국회도서관	
	2/7(수)	「금주의 서평」 제665호 발간 - 도서명 :온라인 세계의 극단주의 - 저 자 : 애덤 클라인		
	2/7(수)	「World&Law」 제2024-3호 발간		
	2/5(월)	「NABO Focus」 제70호 발간 - OP28 논의 동향과 온실가스 감축 경로 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6(화) 14:00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전망모형 고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추정방법: 주거급여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관 406호
	2/5(월)	「Futures Brief」 24-01호 발간 -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 혁명의 파급효과와 의미	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01/30(화) 14:00	독립운동가 이승만 학술 대토론회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심으로	윤주경 의원실, 광복회 등	국회도서관 강당
	01/30(화) 15:00	故 이선군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 죄 개정 입법토론회	박주민·김승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01/31(수) 14:00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강성희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02/01(목) 10:00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한반도 군사위기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자료집 등	1/31(수)	「금주의 서평」 제664호 발간 - 도서명 :이주하는 인류 - 저 자 : 샘 밀러	국회도서관	
	1/29(월)	「이슈와논점」 제2182호 발간 -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1/30(화)	「이슈와논점」 제2183호 발간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30(화) 14:00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 개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01/31(수)	「이슈와논점」 제2184호 발간 -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 법조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01/31(수)	「NARS 브리프」 제31호 발간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육적·법적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02/01(목)	「이슈와논점」 제2185호 발간 -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성		
	02/02(금)	「이슈와논점」 제2186호 발간 -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29.~02.0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9(월)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1/30(화)	노동	채용 면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
1/30(화)	ESG	EFRAG, ESRS 보고 이행을 위한 실무지침 발간 - 「중대성 평가 이행 가이드스」의 주요 내용
1/30(화)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1/31(수)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제조세 분야)
1/31(수)	조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산과세 분야)
1/31(수)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2/1(목)	국방획득/ 방위산업	잠수함 건조 지체로 수백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사건
2/2(금)	공정거래	PEF 설립, 임원 총수 1/3 미만 겸임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시행 임박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